

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[별표 6의2] <신설 2025. 4. 15.>

보험급여 제한 예외 체류자격(제76조의6 관련)

체류자격(기호)
1. 기업투자(D-8)
2. 교수(E-1)
3. 연구(E-3)
4. 기술지도(E-4)
5. 전문직업(E-5)
6. 거주(F-2)

비고

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업투자(D-8) 체류자격의 경우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
별표 1의2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